####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54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현정·한정애·박상혁

정성호 · 민형배 · 민병덕

이광희 • 모경종 • 정준호

박정현 · 이상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#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선박투자회사법」의 개정)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재무상태표

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조(「선주상호보험조합법」의 개정)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4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65조제1항제7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조(「염업조합법」의 개정)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3조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8조제14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	제38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 -
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	
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	
속 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	
한다)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	
인을 받아야 한다.	
1. 대차대조표	<u>1. 재무상태표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결산서류의 승인 등) ①	제40조(결산서류의 승인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	②
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	
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	
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	
관에게 제출하고 <u>대차대조표</u> 와	<u>재무상태표</u>
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
##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총회의 결의사항) 이 법	제34조(총회의 결의사항)
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	
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	
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사업보고서, 재산목록, <u>대차</u>	4 <u>재무</u>
<u>대조표</u> , 손익계산서, 잉여금과	<u>상태표</u>
손실금 처리안의 승인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65조(과태료를 부과할 행위) ①	제65조(과태료를 부과할 행위) ①
조합의 발기인, 이사, 감사, 검	
사인, 청산인, 제43조제2항·제3	
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	
는 「상법」 제386조제2항 및	
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	
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	
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	
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그 행	
위에 대하여 형을 과(科)하는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정관, 조합원명부, 의사록,	7

재산목록, <u>대차대조표</u>, 사업계획서, 사업보고서, 사무보고서,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540조제 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

<u>재무상태표</u>
8. ~ 20. (현행과 같음)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략)

#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결산보고서의 제출·비치	제42조(결산보고서의 제출·비치
등)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	<del></del>
주 전까지 결산보고서(사업보	
고서, <u>대차대조표</u> , 손익계산서,	<u>재무상태표</u>
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	
안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	
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	
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3조(결산) 조합은 매 회계연도	제43조(결산)
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	
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, 정	
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	
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	
인을 받은 후 <u>대차대조표</u> 를 지	<u>재무상태표</u>
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그	
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	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제44조(감자와 공고) ① 조합은	제44조(감자와 공고) ①
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	
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재산목	
록과 <u>대차대조표</u> 를 작성하여야	<u>재무상태표</u>
하다	

#### ②・③ (생략)

제58조(벌칙) 임직원 또는 청산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

- 1. ~ 13. (생 략)
- 14.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 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를 작성 하지 아니한 때

15. ~ 19. (생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8조(벌칙)
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
<u>재무상태표</u>
15. ~ 19. (현행과 같음)